

January 23, 2025

중대재해 사건 동향: 불기소 결정 - 레벨측량 작업 중 굴착기 역과로 인한 사망 사고

최근 검찰은 A사의 사업장에서 A사로부터 토목공사를 하도급받은 B사의 근로자(이하 “**재해자**”)가 바닥 레벨측량 작업을 하던 중 굴착기에 역과되어 사망한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에 대해, 중대재해처벌법위반 혐의에 대하여는 불입건하고, 산업안전보건법위반 및 업무상과실치사 혐의에 대하여 **불기소(혐의없음) 결정**을 하였습니다.

이 사건 사고의 경우, B사의 현장소장이 신호수 및 유도자로서 굴착기 유도 업무를 담당하던 재해자에게 임의로 레벨측량 작업을 지시하였고, 이로 인해 실질적으로 유도자가 배치되지 않은 상태에서 레벨측량 작업이 이루어지게 됨에 따라 A사에 대한 산업안전보건법위반 및 중대재해처벌법위반, 업무상과실치사 혐의 적용 여부가 문제되었습니다.

법무법인(유한) 태평양(이하 “**BKL**”)은 이 사건 사고에 관한 주요 사실관계 및 사고 발생 원인을 분석하는 한편, 관련 법령에 대한 면밀한 법리 검토를 토대로 사건 초기부터 아래와 같이 수사기관에 적극적인 변론 활동을 전개하여 위 A사에 대한 검찰의 불기소 결정을 도출하였습니다.

I. 산업안전보건법상 도급인의 ‘안전보건 조치의무’를 충실히 이행한 점 변론

BKL은 도급인의 안전보건 조치의무에 대한 면밀한 분석·검토를 통해, A사는 도급인으로서 안전보건 조치의무를 충실히 이행하였으므로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가 성립할 수 없음을 적극 변론하였습니다. 즉 A사가 (i) 이 사건 사고 작업에 대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 그 계획에 따라 작업을 하도록 조치하였으며, (ii) 재해자를 유도자로 지정하여 굴착기 유도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였고, (iii) 유도원 준수사항 등에 대한 안전보건 특별교육을 실시하였음을 소명하였습니다. 나아가 (iii) 현장 순회점검 시 재해자가 유도자 업무를 수행하고 있음을 확인하였음을 변론하였습니다.

II. 이 사건 사고에 대한 고의·예견가능성이 없었다는 점 변론

BKL은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는 사업주가 안전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작업을 지시하거나 안전조치가 취해지지 않은 상태에서 작업이 이루어지는 것을 알면서도 방치하는 등 ‘고의적으로 규칙을 위반’한 경우에 성립하는 것으로, A사로서는 B사의 현장소장이 유도

자인 재해자로 하여금 임의로 레벨측량 업무를 하도록 지시함으로써 유도자가 없는 상태에서 작업이 이루어질 것으로는 예견할 수 없었고, 이러한 이례적인 상황이 발생할 것까지 예상하여 사고발생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일일이 이에 대비하여 조치를 취할 것까지 기대할 수 없음을 적극 변론하였습니다.

III. 소위 '2단계 인과관계론'에 따라 중대재해처벌법위반죄 성립 어렵다는 점 변론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보건 조치의무는 중대재해처벌법상 안전보건 확보의무 이행 여부의 판단 기준이 되고 실무상 2단계 인과관계론에 따라 인과관계 성립 여부를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에 BKL은 중대재해처벌법위반죄의 위와 같은 구성요건과 조문 체계, 실무 사례 등을 분석하여 이 사건과 같이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가 성립하지 않는 사안에서 중대재해처벌법위반죄도 성립할 수 없다는 취지의 법리적 변론도 진행하였습니다. 이를 위해 최근 법원이 선고한 중대재해처벌법위반 사건들의 판결 내용 및 검찰의 결정문들을 심층적으로 분석·제시하였습니다.

IV. 시사점: 수사 초기부터 관련 사실관계 및 법률관계 면밀히 분석하여 적극 대응 필요

BKL은 이 사건 사고 발생 초기부터 사고 발생 경위와 원인을 분석하는 한편,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상 이 사건 사고와 관련성이 있는 제반 규정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를 통해 초기부터 효과적인 변론을 진행하였으며, 그 결과 검찰은 BKL의 변론을 깊이 숙고한 끝에 A사에 대한 산업안전보건법위반, 업무상과실치사 혐의에 대하여 **불기소(혐의없음) 결정**을 하였고, 중대재해처벌법위반 혐의에 대하여는 **불입건**하였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사업주의 의무가 광범위함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및 관련 법리에 따라 법 적용 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함을 충실하게 입증하면 수사가 조기에 종결될 수도 있으므로, 관련 사실관계 및 법률관계를 면밀히 분석하여 대응할 필요가 있습니다.

* * *

법무법인(유한) 태평양은 업계 최초로 산업안전 TFT 를 운영하며 다양한 업무 경험과 노하우를 축적하였으며, 산업안전사고 대응 및 Compliance 자문 분야의 탁월한 전문성과 풍부한 실무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법무법인(유한) 태평양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기존의 산업안전 TFT 를 중대재해예방·대응본부로 확대 개편하여 중대재해처벌법령 내용 분석, Compliance 시스템 구축 및 점검, 중대재해사건 수사대응 등에 대한 종합 자문을 제공하고 많은 실적을 보유하고 있으므로, 이와 관련한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 구성원

조상철

변호사

T 02.3404.1984

E sangchul.cho@bkl.co.kr

송진욱

변호사

T 02.3404.0462

E jinwook.song@bkl.co.kr

박성범

변호사

T 02.3404.7666

E sungbum.park@bkl.co.kr

법무법인(유한) 태평양의 뉴스레터에 게재된 내용 및 의견은 일반적인 정보제공만을 목적으로 발행된 것이며, 법무법인(유한) 태평양의 공식적인 견해나 어떤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적 의견을 드리는 것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뉴스레터와 관련된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 위 연락처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